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부분발췌)

제46조 (대부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 한다.

제49조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 (주택구입, 대지구입, 주택신축, 주택개량,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